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문영권

전화 064-729-4422 / 팩스 064-729-8359

보도자료
2021. 9. 14.(화)

제 목

「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」 관련 피의자를 ‘살인죄’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(제12조 제1항 제1호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-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
1 수사 결과 개요

-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(경제·강력범죄전담부)는 「1999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」 피의자에게 ‘살인죄 및 협박죄’를 적용하여 금일(2021. 9. 14.) 구속 기소하였음
 - 경찰에서는 ‘살인교사’를 적용하여 송치하였으나,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, 공범과의 관계, 범행방법,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‘살인죄’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였음

- 공소시효 관련하여, ①피의자의 해외도피 기간(2014. 3.~2015. 4.)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고(2014. 11. 4.→2015. 12. 4.), ②그 연장된 기간 중인 2015. 7. 31. 개정·시행된 「형사소송법」의 ‘살인죄 공소시효 폐지’ 규정이 본건에도 적용됨

※ 공소시효 관련 「형사소송법」 규정

- 제253조(시효의 정지와 효력)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.
- 제253조의2(공소시효의 적용 배제) 사람을 살해한 범죄(중범은 제외한다)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, 국내 강제송환,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왔고,
 - 피의자가 구속(8. 21.)된 직후인 2021. 8. 23. 강력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하여 ‘전담수사팀’을 구성한 후,
 - 사건이 송치된 당일(8. 27.)부터 약 20일 동안 신속·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
 - ①피의자, 공범 A○○,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 실시
 - ②피의자의 핸드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
 - ③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·수색 실시
 - ④주변인물 등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증거를 확보

-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임

※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, 공소시효 연장·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

② 공소사실 요지

가. 살인

- 1999. 8.~9.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○○(2014. 8. 사망)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, 피해자를 미행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등 A○○과 범행을 공모한 후,
- A○○이 1999. 11. 5. 03:15~06:20경 사이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,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

나. 협박

- 2020. 10.~11. 위 살인 범행 관련한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방송사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 ☑